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

전부개정조례안

[신동운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237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0. 12.

발의의원 : 신동운 의원 등 12인

1. 개정이유

행정수요가 복잡·다양해지면서 본회의에서 광범위한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우므로 상임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 의안·청원을 전문적·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의 종류 및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2조~제3조)

나.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의 운영 일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2장)

다. 상임위원회·특별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장~제4장)

3. 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4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,

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,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」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종류)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3조(위원회의 책무)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및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을 준수하여 안건을 심사하여야 한다.

제2장 위원회 운영 일반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위원회를 대표하고, 의사를 정리하며, 질서를 유지하고,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5조제1항제15호 및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제7조제1호에 따라 소속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의안(議案) 또는 청원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시, 해당 사항에 대한 심의·의결에서 제척하거나 회피를 권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부위원장)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부위원장(이하 “부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

- ③ 부위원장의 임기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과 임기가 같다.
-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해당 위원회 소속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, 그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소속 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3장 상임위원회 설치 및 운영

제7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제2조에 따른 상임위원회(이하 “상임위원회”라 한다)와 그 소속 상임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상임위원”이라 한다)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의회운영위원회 6명 이내
2. 행정복지위원회 6명 이내
3. 경제건설위원회 6명 이내

제8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.

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

1. 의회운영위원회
 - 가.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
 - 나. 제2조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다.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한 사항
 - 라.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
2. 행정복지위원회
 - 가. 법무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

- 나.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다. 교육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라. 문화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마. 읍·면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바. 달성교육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사. 달성복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아. 달성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

3. 경제건설위원회

- 가. 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나. 정책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다. 경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라. 건설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마.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바.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사.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

③ 접수된 의안 또는 청원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. 이 경우 의장은 필요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9조(상임위원) ① 의회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상임위원”이라 한다)이 된다. 다만, 제7조제1호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10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재임(在任)한다. 다만, 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(前日)까지 재임한다.

② 보임(補任)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11조(상임위원의 선임) 상임위원은 의장이 의회 의원 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제12조(상임위원장)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(이하 “상임위원장”이라 한다) 1명을 둔다.

② 상임위원장은 제11조에 따라 선임된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, 선거절차 및 방법 등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8조 및 제8조의2를 준용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

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.

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(職)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기간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⑤ 상임위원장이 임기 중 의장·부의장 보궐선거에 따라 의장·부의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해당 상임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.

⑥ 상임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(이하 “부상임위원장”이라 한다)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상임위원장과 부상임위원장이 모두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상임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장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

제13조(특별위원회) ① 제2조에 따른 특별위원회(이하 “특별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.

1. 접수된 의안과 청원이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는 경우
2. 특정한 안건을 보다 면밀하게 심사·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
3.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·처리

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

② 특별위원회가 그 활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,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 기간 연장 사유를 제출하여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제16조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17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

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안전 심사결과보고서 또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(이하 “결과보고서”라 한다)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활동 종료 시까지로 한다. 다만, 제16조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17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

⑤ 특별위원회가 활동 종료 시까지 제3항에 따른 안전 심사결과보고서 또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전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그 특별위원회는 존속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제17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

제14조(특별위원 선임 등)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특별위원”이라 한다)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 다만, 제16조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특별위원을 추천할 경우 의장은 상임위원회별 위원 수 및 비율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여야 한다.

② 의장은 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.

③ 특별위원의 임기는 특별위원회의 제1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존속기간과 같다. 다만, 제16조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17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

④ 보임된 특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15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.

② 특별위원장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한

다.

③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특별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특별위원의 임기와 같다.

⑤ 특별위원장의 사임 및 직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.

제16조(예산결산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·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본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.

1. 예산안

2. 세입세출결산

3.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

4. 그 밖에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·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(이하 “예산결산특별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해의 7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의 6월 30일에 만료한다. 다만, 7월 1일 이후에 선임되었을 때에는 선임된 날부터 시작한다.

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선임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은 제15조, 제5조, 제14조를 각각 준용한다.

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.

제17조(윤리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윤리특별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해의 7월 1일에 시작하여

2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에 만료한다. 다만, 7월 1일 이후에 선임 되었을 때에는 선임된 날부터 시작한다.

④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선임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은 제15조, 제5조, 제14조를 각각 준용한다.

⑤ 윤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.

제5장 보칙

제18조(준용 등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·그 회의 운영·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법」을 따르거나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」을 준용하되, 이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례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의장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.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 「지방자치법」(2023. 3. 21. 일부개정, 2023. 9. 22. 시행)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제65조(윤리특별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윤리특별위원회”라 한다)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제67조(위원회의 권한)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.

□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(2021. 5. 18. 제정, 2022. 5. 19. 시행)

제5조(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·기피 신청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(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.

15.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, 의안·청원 심사, 국정감사,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, 국정조사,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

16. 그 밖에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

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

□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(2022. 6. 2. 일부개정 · 시행)

제7조(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)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· 심의회 · 협의회 등(이하 “위원회등”이라 한다)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 · 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 ·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.

1.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
2. 본인, 배우자,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 · 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(「민법」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

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(2022. 2. 28. 일부개정 · 시행)

제8조(의장 · 부의장의 선거)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

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, 최고 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
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
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.

제8조의2(의장 · 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)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전 5일부터 선거일 전 3일의 18시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 의회사무국은 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으면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.

②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며, 해당 의장 · 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은 중복하여 이루어 질 수 없다.

③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의원에 한하여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다. 정견발표 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.

④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후보자의 정견 발표에 대해 다른 의원의 질의 · 토론 등 일체의 발언은 허용되지 않으며 후보자인 발표자는 본인의 정견 외에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.